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3550 호
----------	----------

제출년월일 2024. 11. .
제 출 자 한종우 의원

1. 제안이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권증진 및 고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업무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동시 규정함으로써 관리종사자의 인권과 김포시민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입주자 등의 책무 및 관리 노동자의 권리와 책무 근거 신설(안 제4조, 제5조)
- 그 밖에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현행 자치법규 : 붙임

다. 예산조치 : 별도협의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4. 11. . ~ 2024. 11. .

나) 예고결과 :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 2024. 6. . ~ 2024. 7. .

나) 협의결과 :

3) 관련부서 : 주택과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김포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비원에”를 “관리종사자에”로, “경비원의”를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경비원”이란”을 ““관리종사자”란”으로,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경비원”을 “관리종사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입주자 등”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6. “주택관리업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경비원”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비원의”를 “관리종사자의”로, “경비원에게”를 “관리종사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비원”을 “관리종사자”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를 “(입주자등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입주자등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시장이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주자등은 관리 노동자에게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관리 노동자의 권리와 책무) ① 관리 노동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입주자등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차별받지 않고 인권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
2. 관리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
3. 업무 중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 입주자등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각종 지원을 요구할 권리

② 관리 노동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가진다.

1. 입주자등을 존중하여야 하는 책무
2.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책무

제6조(종전의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관리종사자의 인권과 복지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비원을”을 “관리종사자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경비원이”를 “관리종사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정신적 고통”을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로 하

며,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으로 한다.

4. 고용현황 및 노동여건을 고려한 공동체 활성화 추진

제7조(중전의 제6조)제1항 및 제3항 중 “경비원”을 각각 “관리종사자”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제1항 중 “경비원을”을 “관리종사자를”로, “경비원 차별금지”를 “관리종사자 차별금지”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8조) 중 “경비원”을 “관리종사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u>경비원</u>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김포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경비원</u>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략) “<u>경비원</u>”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u>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u>을 말한다. “<u>입주자 등</u>”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임원 및 동별 대표자(이하 “<u>입주자대표회의</u>”라 한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u>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u>를 말한다. (생략) 	<p><u>김포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관리종사자</u>에 ----- ----- ----- <u>공동주택 관리종사자</u>의 -----.</p>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과 같음) “<u>관리종사자</u>”란 ----- ----- <u>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u>---. “<u>입주자 등</u>” 법 제2조에 따른 <u>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u>를 말한다. (현행과 같음)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신 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원의 근무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5. ----- 관리종사자-----

-----.

6. “주택관리업자 등”이란 법 제2조 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

② ----- 관리종사자의 -----
----- 관리종사자에게 -----
-----.

③ ----- 관리종사자-----

-----.

제4조(입주자 등의 책무) ① 입주자등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입주자등은 시장이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주자등은 관리 노동자에게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관리 노동자의 권리와 책무) ① 관리 노동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입주자등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차별받지 않고 인권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
2. 관리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
3. 업무 중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 입주자등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각종 지원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신 설>

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시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

을 요구할 권리

② 관리 노동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가진다.

1. 입주자들을 존중하여야 하는 책무
2. 입주자들에게 수준 높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책무

제6조(지원의 범위) ----- 관리종사자의 인권과 복지증진-----

1. 관리종사자들 -----
2. 관리종사자가 -----
3.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
4. 고용현황 및 노동여건을 고려한 공동체 활성화 추진
5. -----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

제7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
- 관리종사자-----

다.

② (생략)

③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는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생략)

제8조(포상)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종사자-----

-----.

제8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
관리종사자를 -----
----- 관리종사자
차별금지-----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포상) ----- 관리종사자-----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64호, 2023. 10.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입주자대표회의) 044-201-3375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044-201-338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자선정) 044-201-336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기수선계획, 행위허가) 044-201-337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하자보수) 044-201-3378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 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3.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4.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9.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주택관리사보”란 제6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2. “주택관리사”란 제67조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3. “주택관리사등”이란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를 말한다.
 14. “주택관리업”이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으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한다.
 15. “주택관리업자”란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6. 삭제 <2016. 1. 19.>
 17. 삭제 <2016. 1. 19.>
 18.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한다.
 19.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0.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21. “임차인대표회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 ②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입주자등은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20.]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03. 31.] (제정) 2021.03.31. 조례 제1809호

경기도 김포시(주택과), 031-980-239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김포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임원 및 동별 대표자(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원의 근무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시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는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김포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